

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예 천 읍



1. 행정예고 할 내용 :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(CCTV) 설치

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- 예천읍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 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(행정예고의 대상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8년 2월 1일 ~ 2018년 2월 20일까지 (20일간)

- 예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-고시/공고) 에서 열람 가능

5. 감시카메라(CCTV) 설치예정 위치

- 가.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57-41 (푸렁이 냉면 앞 삼거리)
- 나.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69-1 (백전1리 노인회관 옆)
- 다.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-10 (예천군청 후문 옆)
- 라.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75-2 (세중슈퍼 옆)
- 마.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-1번지 (한천체육공원 농구장 옆)

6. 의견제출

○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(주소: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, ☎ 054-650-8333, 팩스 054-650-6681)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2. 1. ~ 2018. 2. 20. (20일간)

나. 의견제출 서식 : 붙임 참조

다. 의견내용

-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○ 기타사항 :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